

문 13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여 보상한다.
- ②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.
- ③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,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·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청구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
민방위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14.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인 재난구호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.
- ㄴ. 인사혁신처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 아니다.
- ㄷ. 병무청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다.
- ㄹ.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간사가 된다.
- ㅁ.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① ㄱ
- ② ㄱ, ㄴ, ㄷ
- ③ ㄴ, ㄷ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, ㅁ

문 15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, 집행 계획, 시·도계획과 시·군·구 계획, 읍·면·동 계획으로 나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한다.
- ④ 기본 계획에는 기본 계획의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문 16. 민방위기본법령상 집행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㉠ ~ ㉤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(㉠)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
-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(㉡)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
-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·도 계획을 매년 (㉢)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·군·구 계획을 매년 (㉣)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

	㉠	㉡	㉢	㉣
① 9월 말	10월 10일	10월 말	11월 말	
② 9월 말	10월 말	11월 10일	12월 말	
③ 10월 말	11월 10일	11월 말	12월 말	
④ 10월 말	11월 말	12월 10일	12월 말	

문 20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요원이 아닌 통·리 민방위 대원 甲의 교육훈련 및 그 유예·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甲은 연 10일,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, 필요에 따라 甲의 교육 및 훈련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甲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두어야 한다.
- ③ 甲이 관혼상제를 이유로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경우 교육훈련 소집일 1일 전까지 그 사유를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직접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甲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어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경우 형의 집행종료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문 21. 민방위기본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체 없이 시·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읍·면·동장은 민방위사태 발생이 우려되어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정이 있으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·지역·대상·사유·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 대원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,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,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하나,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읍·면·동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.

문 22.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철도·궤도·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·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·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·이전·분산·소개(疏開) 또는 전환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.
- ③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·지역·기간·방법·사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,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보상을 요하는 응급조치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일부터 30일 내에 손실보상 청구자와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문 23. 민방위기본법령상 등화관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민방위 훈련을 할 때에는 적기(敵機)의 야간공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기가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빛을 내는 설비·장비 및 그 밖의 물체(야광도료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차광 등의 방법으로 각종 불빛을 통제할 수 있다.
- ㄴ.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「민방위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 중 일반 옥외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하여 공습관제 요령에 따라 등화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지정 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 등화의 종류와 실시 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- ㄷ. 등화관제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에 실시하되, 건축물·차량·선박·항공기 및 지하 시설 등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ㄹ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민방위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화염류로서 그 화염류의 빛을 관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, 그 관제를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는 경계관제 또는 공습관제 시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와 그 은폐 정도를 지정할 수 있다.

- ① ㄴ
- ② ㄱ, ㄴ
- ③ ㄴ, ㄷ
- ④ ㄷ, ㄹ

문 24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의 경우 홍수통제소장은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- ④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,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.

문 25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및 대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민방위 대원은 교육훈련 중이나 임무 수행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(標識章)을 달아야 한다.
- ㄴ. 민방위대는 민방위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민방위대기(民防衛隊旗)를 가질 수 있으며, 민방위대기의 제식(制式)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ㄷ. 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.
- ㄹ.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ㄴ, ㄷ
- ③ ㄴ, ㄹ
- ④ ㄷ, ㄹ